

< 변경 대비 표 >

1. 변경 대상 투자신탁 : 키움키워드림TDF2050증권투자신탁제1호[혼합-재간접형]

2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09월 06일

3. 주요 변경 사항 :

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수시공시 관련사항 등)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(증권대차거래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 등)

4. 변경사항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<p>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.</p>	<p>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.</p>
제48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</p>
부칙	<u><신설></u>	<u>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.</u>

[일괄신고서, 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투자비용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
효력발생일	-	<u>2023년 09월 06일</u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<u>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</u>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수시공시 관련사항 등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(증권대차거래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 등)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) 투자대상	<u><신설></u>	<u><주석1> 및 <주석2></u> <u>증권대차거래의 목적에 관한 내용 추가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3) 기타투자위험	<u><신설></u>	<u>증권대차거래의 위험에 관한 내용 추가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)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 1) 요약재무정보	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<u><주석4></u> <u>주식의 매매회전율에 관한 내용 추가</u> <u><주석5></u> <u>증권대차거래로 인해 발생된 수익 또는 비용에 관한 내용 추가</u> <u><주석6></u> <u>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에 관한 내용 추가</u>
2) 재무상태표 ~ 3) 손익계산서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)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4) 운용자산규모	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) 수시공시 나. 수시공시	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
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투자비용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투자실적추이	-	
운용전문인력	-	
효력발생일	-	<u>2023년 09월 06일</u>